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. 8. 11 선고 2020가단40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

담당변호사 이성호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7. 7.

판 결 선 고 2021. 8. 11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. 5. 18.부터, 피고 C은 2021. 3. 24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1.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나. 피고 2.에 대한 청구 :

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건희

청 구 원 인

2019년 10월 25일

-경기도 양평군 D []의 건물과 토지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한 9천7백5십만 원을 반환 요청합니다.

-매수인 측 : 공인중개사 B [] (전화번호 1 생략)

서울 E [] 대표 C [] (전화번호 2 생략)

-매도인 측 : 공인중개사 양평 F [] 대표 G []

집 매매 당시 매수인 측에서 다른 집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B []이 해당 집을 추천하여 매매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고, 매도인도 개인적으로 꼭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공인중개사 측에서 매매가를 19억으로 하고 수수료 2억 5천을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따라서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 B [],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G []에게 각각 1억 2천5백만 원씩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용지에 매매 당일 아침에 도장을 찍어주고 매매를 하였습니다.

2억 5천에 대한 세금이 5천5백 정도를 예상하고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각각의 통장에 9천7백5십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.

저희가 매매한 집이 컨설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지급한 비용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 매도인 측 F []과는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. 그러나 매수인 측 B []은 반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.

계약 당시 B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. E 대표가 계약서에 날인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정이 생겨 오지 못하니 F만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 그렇게 했습니다.

E 대표 C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므로 B와 E 대표 C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한 9천7백5십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.

